

# 예 산 총 칙

2019년도 추경 1 회

제 1 조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789,933,545	23,698,006
일반회계	737,666,005	22,129,980
특별회계	52,267,540	1,568,026
공기업특별회계	48,078,597	1,442,358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28,940,658	868,220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19,137,939	574,138
기타특별회계	4,188,943	125,668
의료보호비 특별회계	2,173,795	65,214
주민소득사업 특별회계	1,697,374	50,921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317,774	9,533

제 2 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 3 조 2019년 재무부담 행위는 [해당없음]으로 한다.

제 4 조 2018년 명시이월 사업은 불임 "명시이월 사업조서"와 같다.

제 5 조 사고이월 사업은 불임 "사고이월 사업조서"와 같다.

제 6 조 계속비 사업은 [해당없음]으로 한다.

제 7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4,011,669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20,400,000천원으로 한다.

제 9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또는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